

## (주)아모레퍼시픽그룹 정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기술과 정성으로 아름다움과 건강을 창조하여 인류에 공헌한다는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회사의 소명을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로 정의한다.

모든 경영 활동은 인류와 대자연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균형 있게 창출한다.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이해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고객이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유익하며, 사회 및 환경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기반으로 기업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조화로운 성장을 구현한다.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 나가며, 사람과 기업, 대자연의 아름다운 공존을 실현한다.

### 제1장 총 칙

#### 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 이라 칭하고(이하 이 회사라 칭함) 영문으로는 AMOREPACIFIC Group이라 표기한다.

제2조 (사업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
4.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5.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6.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 7.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 8. 부동산 매매 및 임대 9.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
- 10. 위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 제3조 (본점 및 지점, 출장소, 영업소의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역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육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제7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배당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칭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구천만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3%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이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소정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이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또는 공정거래법상 이 회사의 자회사에 해당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가발행)

① 이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의 2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10조의 3 (일반공모증자등)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해외합작투자선,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는 상법시행령 에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원일을 기재하여 주

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 채

####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9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45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45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 이사회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9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45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45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유고시에는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유고시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25조 (의결권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 이사회

### 제29조 (이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으로 한다.
- ② 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한다.
- ③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전원을 특정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제30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정하는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하는 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1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 사내이사 : 3년

2. 사외이사 : 1년부터 3년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 시 그 임기를 정한다.

- ② 사외이사의 총 재임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임기 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3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③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한다.

제34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의 3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사가 이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 <삭 제>

#### 제36조 <삭 제>

#### 제37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 제38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기회유용 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39조의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경영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그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역 및 고문의 위촉과 보수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6 장 감사위원회

#### 제41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1조의3 <삭 제>

#### 제41조의4 <삭 제>

#### 제41조의5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조의6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7 <삭 제>

제7장 계 산

제42조 (사업년도) 이 회사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

에 5년간, 그 등분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익금의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4조의2 <삭제>

제45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질권자에 지급한다.

제45조의2 (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에 관한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로부터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에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한 이익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 ③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경영상 필요한 사유를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정관은 198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198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198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198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199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199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199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199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정관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2는 본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
10. 이 정관은 199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① 이 정관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③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사가 발행한 개정상법시행일(1996.10. ①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율+1% 추가 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12. 이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정관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정관은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정관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정관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정관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정관은 200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정관은 200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개정 정관은 제5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2013년 3월 22일)에서 결의하는 즉시 시행한다.
23. 본 개정 정관은 제5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2014년 3월 21일)에서 결의하는 즉시 시행한다.
24. 제5조, 제6조, 제7조2의 개정내용은 주식분할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25.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6.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본 개정 정관은 제60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2019년3월15일)에서 결의하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8. 본 개정 정관은 본 개정 정관은 제6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2021년 3월 19일)에서 결의하는 즉시 시행한다.
29. 본 개정 정관은 제63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2022년 3월 24일)에서 결의하는 즉시 시행한다.